

## 일본,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 유예 제도를 둘러싼 논의

유성현 연구원

### 요약

일본의 국민연금 납부 유예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제도임. 이번 9월 연금부회에서 후생노동성은 일부 유예 이용자가 세대주의 도움을 받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세대주의 소득을 납부 유예 제도의 조건에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그러나 연금부회 위원들은 사회보장제도가 가족이 아닌 사회에 의해 지원받는 것을 강조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예 후 추납을 장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일본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 유예 제도는 저소득층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보험료 납부 유예 제도는 2004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미래의 무연금·저연금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됨<sup>1)</sup>
  - 납부 유예 기간은 노령연금 수급 자격 기간에 포함되지만, 추후 납부가 없을 경우 미래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함<sup>2)</sup>
    - 일본 국민연금제도에는 납부 유예 제도와 면제 제도가 있는데 납부 유예 제도는 10년 이내에 추납을 해야 연금액에 반영이 되며, 납부 면제 제도는 추납하지 않아도 연금액에 일정 비율 반영됨<sup>3)</sup>
    - 납부 유예 제도는 납부 혹은 추납할 보험료를 경감해 주지는 않으며, 3년도 이후에 추납할 경우에는 유예 시점의 보험료에 일정한 가산금이 붙음
  - 2022년 기준 전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대상자의 5%(약 56만 명)가 납부 유예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25~34세 연령층의 약 15%가 납부 유예 제도를 이용하고 있음
    - 납부 유예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의 51%는 무직이며, 36%는 파트타임 노동자임<sup>4)</sup>
  - 2023년 기준 추납 권장 대상자<sup>5)</sup>는 818.9만 명에 이르지만, 이 중 19.7만 명만이 실제로 추납을 완료함<sup>6)</sup>

1) 2004년 당시에는 30세 미만에 대해 10년간(2015년 6월까지) 시행되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현재는 2030년 6월까지 납부 유예 제도의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비정규직 고용이 중년층에서도 확대됨에 따라 대상도 50세 미만까지 연령 제한이 완화됨

2) 납부유예제도 도입 당시, 노령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25년의 자격 기간이 필요하였지만, 현재는 10년으로 단축되었음

3) 日本年金機構(2024. 4), “日本の国民年金制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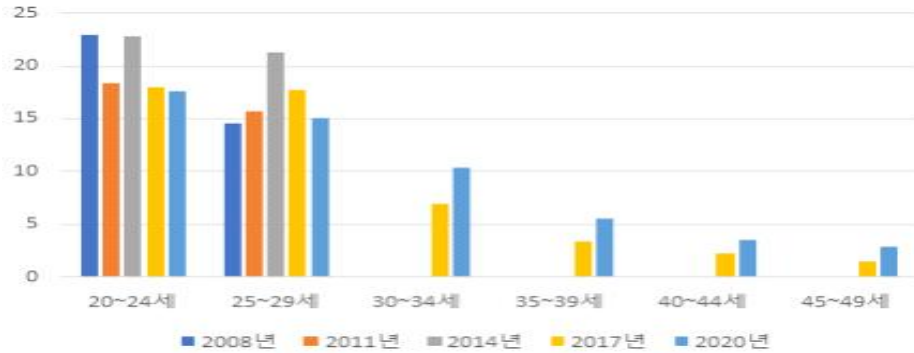
4) 年金改革ウォッチ(2024. 10), “国民年金保険料の納付は、義務? 権利?”

5) 유예 승인 후 2년차 또는 9년차에 있는 자로, 2년차에 있는 대상자는 보험료에 가산액이 추가되기 전 추납할 수 있는 대상자이며, 9년차 대상자는 추납 가능 기한인 10년의 직전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는 대상자임

6) 厚生労働省(2024. 6), “令和5年度の国民年金の加入・保険料納付状況を公表します”

〈그림 1〉 일본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 유예 제도 이용자 수(연령별)

(단위: 만 명)



- 주: 1) 총소득 금액이 불분명한 가구는 제외됨
- 2) 이용자 수는 각 조사연도의 전년도 말 시점임
- 3) 2011년 조사에 대해서는 이와테현, 미야기현 및 후쿠시마현이 제외됨
- 4) 2014년, 2017년 조사에 대해서는 후쿠시마현의 피난지시구역이 제외됨
- 5) 2016년도부터 납부 유예 제도의 대상이 50세 미만으로 확대됨

자료: 厚生労働省(2024), “国民年金被保険者実態調査”

- 올해 9월 연금부회<sup>7)</sup> 회의에서 납부 유예 제도 이용자 중 세대주에게는 일정한 소득과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 유예 제도를 이용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후생노동성은 납부 유예의 조건으로 세대주(부모)의 소득을 요건으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 후생노동성은 현행 제도를 연장하면서, 세대주(부모)의 소득을 요건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함
    - 현행 제도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만이 기준이고 세대주의 소득에는 제한이 없으나, 개정 방향에서는 세대주(부모)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그 가구의 보험료 납부 책임을 인정하고 유예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함
  - 개정안은 가구 단위의 책임을 강조하며, 유예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나은 사회보험료 징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표 1〉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유예 제도의 개정안과 현행 제도의 비교

제도	적용 기준		연금급부
납부 유예 제도 (개정안)	1. 본인·배우자의 전년도 소득	납부 전액 면제 기준과 동일	해당 없음
	2. 세대주의 전년도 소득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제한	해당 없음
납부 유예 제도 (현행)	본인·배우자의 전년도 소득	납부 전액 면제 기준과 동일	해당 없음
납부 면제 제도	본인·배우자·세대주의 전년도 소득	(부양 친족 등의 수 + 1) × 35만 엔 + 32만 엔	국고 부담금

주: 1) 세대주의 소득을 고려하여, 세대주에게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보험료 납부 유예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납부를 요구하는 것을 검토함

2) 상기 납부 면제 제도 적용 기준은 전액 면제 기준임

자료: 厚生労働省 年金局(2024. 9), “国民年金保険料の納付猶予制度について”

7)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의 사회보장심의회 내에 설치된 연금부회(年金部会)는 정부 관계자, 연금 전문가 등이 연금 제도의 미래를 논의하는 조직임

- 하지만 연금부회 위원은 사회보장제도가 가족이 아닌 사회에 의지하는 제도이며, 유예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납을 독려하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후생노동성의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함<sup>8)</sup>
  - 일본이 국제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책임을 지는 기간이 긴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의 노후소득까지 대신하여 책임지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함
  - 유예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추납하지 않는다면 유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 제도 이용자의 추납 현황을 분석하여 유예 제도가 실제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8) 第18回社会保障審議會年金部会(議事録)